

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

의안번호	92
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'99. 9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□ 제안이유

-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군내에 소속되지 않는 내·외국인을 대상으로 「평창군명예군민증서」를 수여하기 위하여,
- 명예군민 선정기준,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.(안 제2조)
-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.(안 제4조)
-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의무 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.(안 제5조)
- 명예군민에 대해서는 각종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(안 제6조)

□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관계부처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- 마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군내에 소속되지 않는 내국인과 외국인·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평창군 명예군민증서(이하 "명예군민증"이라 한다)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예군민증 수여결정) ①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 조서를 작성하여 평창군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.

②명예군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
제3조(증서서식및서류보존) ①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.

②공적에 관한 조서등 관계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

제4조(명예군민증의 취소)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.

제5조(권리의무 부담)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·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6조(실비보상) 이 조례에 의한 명예군민에 대해서는 각종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참고사항>

지방자치법 발취

第13條(住民의 權利) ①住民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地方自治團體의 財産과 公共施設을 이용할 權利와 그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均등하게 行政의 惠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.

②생략

第14條(住民의 義務) 住民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地方自治團體의 費用을 分擔하는 義務를 진다.